

소득발생 내역

소득구분	상호	지급처	총수입금액 (총급여액· 총연금액 포함)	원천징수 세액	업종코드	단순경비율(%)

※ 제출 대상은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92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,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 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로 한다.